

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4일



1. 공고방법 :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www.kiscon.net)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
2.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내역
 - 상호명 : 비에스신소재개발(주)
 - 대표자 : 류*형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93 제지하층 제8호(상계주공아파트10단지 종합상가) (상계동)
 - 처분업종
 - 도장·습식·방수·석공사업(등록번호 : 노원-24-라-03)
 - 위반내용 : 건설공사대장 미(지연)통보
 - 처분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
 - 위반내용(상세)
 - 문래동3가 58-77 증축공사 中 스타코 및 단열공사
 - 자양동 216-1 증축 및 대수선공사 中 스타코 및 단열공사
 - 고척동 53-2 대수선공사 中 스타코 및 단열공사
 - 과태료 : 1,200,000원
 - 처분일자 : 2026년 5월 4일